

해양에서 사경비제도에 대한 기초 연구

진성용* · 주종광** · 이은방***

** (주)하나산업, ** 한국해운조합,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A Basic Study on the System of Civil Guard at Sea

Sek-Yoon Jin* · Jong-Kwang JU** · Eun-Bang Lee***

* Graduate school,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606-791, Korea

** Department of Maritime Police Science, National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606-791, Korea

요약: 해양에서 각국의 사경비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육상에서 사경비(私警備) 현황을 조사하였다. 미래의 해양치안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공경비(公警備)를 유기적으로 보조하고 수요자의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에서 사경비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해상치안환경에 부합하는 해양 사경비 경비모형을 설계해나가고자 한다.

핵심용어: 해상경비, 해상치안, 경비지도사, 보안장비, 경비업

1. 서론

우리나라의 해양경비는 각각 해군과 해양경찰이 담당하는 공경비(公警備)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EEZ(배타적경제수역) 시행에 따른 경비관할해역이 확대되었고 주변 국가들과의 해양관할권 분쟁이 표면화됨에 따라 해양경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또한 테러, 해적 위협은 물론, 외국어선의 불법어로, 밀수, 밀항과 같은 국제성 범죄위협 등 비군사적인 안보위협이 증가로 전통적 안보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광활한 해역을 국가가 소유한 해양경비 세력에만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비수요에 비례해서 해양경비의 세력을 단순히 확장해 가기도 여러 제약이 따르고 있다. 해양활용의 다양화와 가치창출활동의 증가로 임해시설, 항만, 어장, 선박, 해양레저시설 등에 대한 해양경비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행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체나 민간경비원, 그리고 경비지도사는 선박이나 해양레저시설, 항만, 해양산업시설, 우주센터 등 임해(臨海)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해양전문지식이 부족할 것이므로 완벽한 해양경비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제한된 예산과 자원으로 늘어나는 모든 해양경비수요를 공경비체제로만은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미래의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공경비를 유기적으로 보조할 해양에 사경비제도 설계를 목적으로 국내외의 사경비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특성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해상치안환경에 부합하는 해양경비사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사경비(私警備)제도 현황 분석

2.1 사경비업 현황

순수 사경비산업의 발전은 경비업체의 단합 및 제반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1978년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가 설립되었고 1980년대 초 외국 기술과 자본의 도입으로 활기를 띠었으며,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등의 국제행사를 통해 급속한 성장을 하였다. 그리하여 경비업법이 제정되던 1976년 첫해에 5천여 명의 경비원에서 2006년에는 127,620명의 경비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한편 경비의 형태에 있어서는 첨단기계경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인력경비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완전무인경비의 형태보다는 인력과 기계경비를 혼용한 혼합경비 형태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사회가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시대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야기된 각종 사회병리현상들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의 욕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다. 민간차원의 사경비는 공경비의 한계로 야기될 수 있는 국민생활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경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2 사경비 제도의 의의

* 강길훈(2000), 「경비지도사의 교육훈련체제에 대한 경비업자의 의견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0권, pp.10.

강길훈(2000), 전계논문, pp.10.

한중욱(2003), 경찰경비론, 경찰대학, pp.417-418.

* * 정희원, jsvsmile@hanmail.net

** 정희원, coastguard@empal.com

*** 종신회원, eunbang@hhu.ac.kr

“경비업”이라 함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 대상 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인 시설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인 호송경비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인 신변보호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인 기계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인 특수경비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경비업법 제2조).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을 보면 일반 경비지도사는 시설 경비업·호송 경비업·신변 보호업 및 특수 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하게 되어있다.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일반 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배치하되,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 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할 것. 다만, 특수경비업의 경우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일반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하여야 한다. 시설 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 가운데 2개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 경비지도사의 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또한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하고, 선임·배치기준은 경비업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 기준과 동일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 정의하였다(경비업법 제2조제1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는 인력을 위주로 하는 근무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부 국가중요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청원경찰 또는 특수경비에 의해 경비업무가 수행되며, 국가공안기관의 관리와 우발상황에 대비해 경찰의 지원을 받고 있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국가중요시설별 여러 형태의 기계경비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지만 아직 인력경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일부 경비시스템은 독립적이고 단편적인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비근무형태에 일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경비업무를 위한 경비운영체계변화와 경비기기 도입의 증가와 경비기기의 통합화가 주를 이룬다. 인력에 의한 경비업무는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안환경변화와 경비기기의 기술발달 등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비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지역의 공격행위가 주로 북한의 테러적 공격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통제적이고 고전적인 보안운영형태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민정서와 사고방식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방법과 기계경비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2.3 사경비업의 본질

경비업은 위험발생방지에 관한 일정 사무를 사인으로 하여 금 수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경비업의 인정은 경찰사무(위험방지사무)가 오로지 국가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에 의해서도 수행됨을 뜻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사회기능의 분화와 경비수요의 급증에 대한 경찰인력의 부족, 과중한 근무시간과 업무량, 경찰장비의 노후화 등에 대한 보완의 의미를 가지며, 국가예산의 절감에도 기여한다.**

경찰업무의 민간부문 이양에 대하여 김성연의 조사에 의하면 민간경비회사에 경찰의 업무들을 위탁한다고 했을 때 가장 찬성도가 높은 항목은 중요인물경호, 귀중품 수송, 우범지역순찰활동, 교통통제, 실종자 탐문수색 등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민의 절반은 이들 업무의 민간부문 위탁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업무의 사적성격이 강한 업무들에 대한 민간이양에는 찬성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한 교통통제는 민간부문이 담당할 수 있지만, 교통위반을 적발하거나 주차단속과 같이 공권력을 적용하는 업무영역의 민간부문 이양은 어렵다는 것이 일반시민의 공통된 의견이다.***

경비업자는 국가권력을 갖지 아니한다. 경비업자에 속한 자는 다만 경비를 요청한 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개인의 안전은 매매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개인의 안전이 필요한 금전수단을 통해 확보될 수 있을 뿐이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계속 제기되는 후기자본주의의 위험사회에서 사람들이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적인 수준으로 민간경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임에 틀림없다. 치안활동의 영역에 시장논리가 개입하는 것은 치안의 문제, 안전의 문제를 개인주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에 의한 위험방지와 용역경비업자에 의한 위험방지는 법적으로 다르다. 양자는 모두 안전을 보호하지만, 법익의 보호목표가 다르다. 경찰은 공익의 관점에서 공적 안전을 보호한다. 그리고 공적 안전의 요소로서 사익을 보호한다. 그러나 용역경비는 위탁자인 사인의 사익을 보호한다. 그러한 범위 안에서 공익이 보호되는 효과를 갖는다. 용역경비원들은 위탁

* 정태환(2006), 국가중요시설의 기계경비시스템 적용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호, pp.54-55.

** 홍정선(2007), 경찰행정법, 박영사, pp.146.

*** 김성연(2002), 한국의 민간경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302-303.

**** 홍정선(2007), 전개논문, pp.147.

***** 김성연(2002), 전개논문, pp.331.

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데 의무를 진다.*

3. 외국의 사경비제도의 현황

3.1 미국

미국의 민간경비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서 전통적인 자구사상(Vigilantism)을 바탕으로 덩독 발전되고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부개척시대에는 1800년 초창기 영국산업혁명의 영향과 19세기 중엽의 캘리포니아 등의 서부개척시대를 맞이하면서 금괴수송을 위해 발달하기 시작한 동서간 철도경비는 민간경비 발달의 획기적인 계기를 가져왔고, 남북전쟁을 치르며 현재와 같은 연방수사국이나 전국적 단위의 경찰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위조지폐를 단속하기 위한 사설탐정기관이 발달하게 되었다. 당시 미국 연방정부는 연방형사사법기관의 능력이 부족하자 1861년 핑커톤사와 계약을 맺어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미국경찰은 신대륙 개척초기 뉴잉글랜드 지역에 정착한 영국인을 통하여 영국식 경찰제도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각지에 건설된 식민지는 그 지방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영국의 보안관(sheriff)과 치안관(constable)제도를 도입하였다. 1830년대에서 1840년대의 도시화, 산업화 새로운 이민의 증가로 도시경찰의 원형인 시보안관(city marshal)이 생겼다. 19세기 미국경찰은 지방분권화와 정치적 영향으로 효과적인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경찰(District Police)와 주경찰청(State Constabulary)이 등장하였다.***

20세기 들어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파괴활동이나 스파이 같은 문제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민간경비업은 더욱 성장했다. 현대적 민간경비는 미국의 경비산업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이다. 산업경비의 필요성이 군수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여타 산업에 널리 확산된 것이다. 기업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경비를 강화했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보험에 들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시 경비회사와 계약을 의무화하여 또 다른 경비업체 발전의 요인이 되었다.****

또한 미국 각주의 입법기관들은 경비관련 종사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서 교육과 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경비와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경비자문위원회는 경비업의 표준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권고안들을 제시하였다.

* 홍정선(2007), 전계논문, pp.149.

** 서상열(2008), 한국 민간경비의 인력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44.

*** 이철현(2007), 경찰 공공부문 이양이 자치경찰과 민간경비의 직무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31.

**** 서상열(2008), 전계논문, pp.45.

이에 따르면 모든 분야의 민간경비관련 근무자는 최소한 120시간의 최초교육을 받도록 함을 권고하고 있다.*****

미노동청(BL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2003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 경찰관 수는 612,420명이며 미국 내 활동하는 민간경비원은 961,660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53%가 경비업체와의 계약 및 아웃소싱에 의하여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2 일본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의 점령으로 전제적인 군국주의에서 민주국가로 전환하는 민주경찰제도의 확립이라는 목표아래 1947년 종래 내무성 소속하의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조직을 독립적인 공안위원회제도로 개편하고, 지방분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 및 5,000명 이상의 마을에 자치경찰제를 채택하여 전체경찰을 국가지방경찰과 자치체경찰로 동시에 존재하는 이원적 경찰조직을 가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적 개념의 민간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경비업체가 출현하는데, 현재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간경비 회사인 SECOM이 1962년 일본경비보장주식회사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1964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일본민간경비업체는 국민들에게 크게 인식되었으며,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에서 6개월간의 박람회 기간동안 큰 사고 없이 행사를 치러내면서 국민들에게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민간경비산업은 1970년대 이후 일본 최대 성장 산업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일본 경비원의 교육은 신입교육과 현업교육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신입교육은 경비원으로서 최저한 습득해야 할 기본교육(기본적 법령, 지식, 마음가짐, 기능 등) 15시간을 받고, 추후 업무별 교육을 15시간 받은 후 각각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현업교육은 기본교육 6개월마다 3시간, 업무별 교육은 6개월마다 5시간이다.****

민간경비원의 수는 2006년말 현재 49만1,082명으로 상용경비원은 39만1,834명이고, 임시경비원은 9만9,248명이다.*****.

3.3 독일

독일 최초의 경비회사는 유대계 독일인 Salomon과 Jacob이 미국 민간경비산업을 토대로 1901년 7월15일 Jacob의 고향인 하노버에 설립한 Das Hannoversche Wach-und Schliess-institute

***** 강영길(2007), 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제도의 정립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13.

* 서상열(2008), 전계논문, pp.49.

** 이철현(2007), 전계논문, pp.33.

*** 서상열(2008), 전계논문, pp.61.

**** 강영길(2007), 전계논문, pp.116-117.

***** 서상열(2008), 전계논문, pp.64.

Jacob und Co이다. 독일경비협회가 독일 민간경비 100주년을 기념하여 협회 기관지를 통하여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2002년 현재의 독일 민간경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은 동·서독의 통합이후 증가하는 범죄문제와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범죄대책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독일 민간경비는 통일 후 1992년부터 9년 동안 기업수, 종업원수 모두 크게 신장하여 경비업체수는 1,290개에서 2,500개로 약 2배, 경비원도 97,000명에서 14만명으로 45%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02년 7월에 「민간경비에 관한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에 관한 법령(Verordnung ueber die Berufausbildung zur Fachkraft fuer Sxchutz und sicherheit)」이 완전히 새롭게 제정되었다. 독일민간경비아카데미(Deutsche Sicheheits akademie: DSA)가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3년동안 880시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4. 해양 사경비제도

4.1 해양에서 사경비제도 도입필요성

미국은 9.11테러 사건이후 자국의 보안관련 부서를 2003년 1월에 국토보안부(MHS : Ministry of Homeland Security)를 설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자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화물과 승객에 대한 검색도 강화하였고 승객과 화물이 출발하는 외국 공항, 항만에서의 보안강화도 요구해 왔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로 파급되어 해상운송분야에서는 2002년 12월 국제해사기구(IMO)가 기존의 SOLAS협약(국제인명안전협약)을 개정하여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따른 규칙'(ISPS Code)을 부속서에 도입하였으며, 2004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ISPS Code는 IMO 회원국 모두가 준수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고, 세계 대다수 국가가 IMO 회원이기 때문에 전 세계 항만이 사실상 항만시설의 보안체제를 강화하는 ISPS Code 체제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에 부응하기 위해 2003년 10월 15일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규정'을 고시로 제정하여 ISPS Code의 국내수용조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고시'로서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고 일부 사항이 미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 8월에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본 법은 2008년 2월 4일에 시행되었다.

미국은 자국과 해상교역 중인 각 국가의 ISPS Code에 의한 항만보안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국의 해상보안대책에 반영하는 한편, 한미 양국간 항만보안 분야의 협력 증진을 통하여 대테러 능력을 제고하고자 미연안경비대

(USCG) 주관으로 우리나라 항만을 방문하고 있음. 그리고 외국 항만의 대테러 조치 불이행 또는 중대결함 확인시 동항만으로부터 선박 또는 화물의 입항을 제한하고 있음(시행근거는 해상교통보안법(MTSA : Maritime Transportation Security Act of 2002)). 그리하여 2004년 7월 및 2008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항만방문 후 항만보안검색 및 시설·장비 운영 등 ISPS Code 현장이행 실태와 우리나라 항만보안제도 개선 및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한 후 우리나라 항만보안수준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시설(임해시설 포함)이나 항만 경비 및 보안 분야 등 해안경비분야에서는 일반경찰서의 관할영역과 해양경찰서의 관할영역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여 사실상 그 구분도 모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일반경찰은 해양에 대한 전문성 결여되어 있으며, 국제 선박항만보안규칙(ISPS CODE)에서 규정한 내용을 일반경찰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결국 해양 분야에서의 일반경비지도사의 전문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 현행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해양경비관리사 제도를 신설하여 해양 및 해안에서의 사경비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계경비는 공경비(公警備)와 사경비(私警備)를 모두 포괄하는 해양경비시스템 구축을 통한 해양경비서비스의 품질 개선이 바람직하다.

해양경비와 해안경계는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군이 비군사적인 부분은 해양경찰청이 담당하는 국가주도의 해양경계경비를 실시하여왔다. 그러나 해양보안환경의 변화와 비군사적인 해양경비수요의 증가는 국가의존 해양경비 비용부담의 증가는 물론 현장에 실정에 부합하고 유연한 고품질의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가주도의 해양경계경비의 기능을 보조하고 다양한 해양활동의 특성에 맞는 해양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경비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4.2 해양경비업(Maritime Civil Security)

사경비업은 첫째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경비업무, 둘째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호송경비업무, 셋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신변보호업무, 넷째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기계경비업무, 다섯째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업무의 전부

* 서상열(2008), 전계논문, pp.66,67-68.

** 강영길(2007), 전계논문, pp.122.

*** 김형태(2008), 항만시설 경비보안체제의 효율화 방안, 월간해양수산 통권 제282호, pp.4-5.

또는 일부를 도급 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2 해양경비업법 제정

해양경비업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해양경비업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비업법의 내용으로는 해양경비업의 정의, 해양경비관리사, 해양경비업의 업무영역, 경비방법, 경비관리사 및 경비원의 교육·훈련, 해양경비업협회, 지도감독, 벌칙 및 과태료 등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4.3 해양경비관리사

해양경비관리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나 경비원 20인마다 1인씩 해양안전경비, 해양특수경비, 해양시설경비, 해양기계경비에 한하여 선임·배치하여야 한다.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인까지는 해양경비관리사 1인씩 선임·배치하되, 20인을 초과하는 50인까지 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해야한다.

해양경비관리사는 항만, 여객선터미널, 선박, 여객선, 해상에서의 사경비부분, 해양산업시설, 임해시설 중 국가중요시설이나 선박접안시설, 기타 공공의 목적에 이용되는 해양관련시설 등 해양 및 해안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5. 해양경비업 영역

5.1 해양안전경비

해양안전경비는 해양경비업체가 운용하는 해양안전경비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해양에서 선박, 해양구조물, 양식장,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협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경비업무이다. 특히, 해수욕장, 해양레저시설, 요트경기대회 등에서의 안전경비업무, 요트나 호화유람선, 크루즈선, 여객선에 승선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개념을 말한다.

5.2 해양수색구조경비

조난선박이나 조난자에 대한 해상수색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개념이다. 해양오염감시, 적조예찰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경비업무이다. 예컨대 해상에서 실종자가 발생할 경우 민간경비업체가 보유한 해양경비선과 경비행기 등 항공력을 동원하여 수색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개념이다.

5.3 해양특수경비

해양특수경비는 해양에서 국가중요시설, 해양구조물 등 중요경비대상에 대하여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협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위험물운반선이나 중요한 특수화물 등을 선박에 선적하여 운송할 경우나 테러예상지역 및 해적출몰지역에 운항선박에 대한 무장한 특수경비원이 승선하여 해양특수경비를 수행하게 된다.

예컨대 한국은 고리1호기 이후에도 영광, 울진, 월성에 원전 20기를 지으면서 기술을 축적해 왔다. 여기에 현재 짓고 있는 신고리원전 4기와 신월성 2기, 건설중인 신울진 2기를 합치면 2015년에는 해안가에 위치한 원전 28기가 해양경비업 영역이다. 고흥 나로도우주센터 등 해안가에 위치한 국가 중요시설, 해양관련 방위산업체, 민간 주요산업시설 등도 해양경비업으로 경비를 실시할 경우 탁월한 경비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비영역이 될 수 있다.

5.4 해양시설경비

경비를 필요로 하는 해양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협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예컨대, 항만, 어항, 연안 및 국제여객선터미널, 양식장 등 바다목장, 수상관광호텔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항만법상 지정항인 28개의 무역항과 24개의 연안항이 있다. 특히 컨테이너터미널 등 항만물류터미널은 해양경비전문가에 의한 경비가 필요한 전형적인 해양경비업 영역에 속한다. 어항법상 1종어항, 2종어항, 3종어항으로 나뉜다. 여기에 어항으로 구분되지 않는 포구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엄청난 수의 어항시설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우리나라의 연안여객은 2008년 까지 7년제 약 1,000만 명이 넘고 있으며, 이들 여객은 13개의 연안여객선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다. 국제여객선터미널을 포함한 이들 여객선종합터미널은 다중집합시설로서 보안사고에 취약하고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양식장 등 바다목장은 해양에서 어족자원의 고갈로 인한 장래 식량의 보고이며, 현재 전복양식장, 가두리양식장 등 고부가가치 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고, 수상호텔이라는 함은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로서 전형적인 해양경비업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5.5 해양기계경비

해양경비업 영역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

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테러 등 위협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예컨대 제철소, 조선소, 석유화학산업시설, 시멘트생산시설, 비료생산시설, 천연가스(LNG)산업기지 등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임해산업시설과 방위산업체는 전형적인 해양경비업 영역이다.

LNG 탱커선, 원유선 등 위험물운반선이나 고부가 가치화물을 선적한 화물선의 정박 중의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해양경비업을 활용한다면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다.

국제여객선, 연안여객선의 경우 운항 중에 민간보안세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 정박 중에는 특히 보안사고에 취약함으로 선원에 의한 정박당직과 병행하거나 야에 사경비에 위탁하는 것이 안전성과 비용 면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이다.

2001년 3월 6일 전남 여수시 여수항여객선터미널에서 야간에 정박중인 여객선 데모트라시3호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의 경우, 당시 정박당직을 서야할 기관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하였고, 여객선사 측에서는 보안사고의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였으나, 끝내 당해선박의 화재원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해양안전심판원에서도 알 수가 없었던 사건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비나 보안에 관한 비전문가인 선원만이 정박당직을 서는 등 잠재 위험이 높다.

우리나라의 연근해 어선은 적게는 수천만에서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자산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정박당직은 물론 항·포구를 망라해서 경비를 담당하는 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래서 각종 절도사건이나 방화사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업무. 2. 위험물운반선이나 중요한 특수화물 등을 선박에 선적하여 운송할 경우나 테러에 상지역 및 해적출몰지역에 운항선박에 대한 무장한 특수경비원이 승선하여 해양특수경비를 수행하는 업무.	요시설, - 해양관련 방위산업체, - 민간 주요산업시설 등
해양 시설 경비	경비를 필요로 하는 해양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협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무역항만(28개) - 연안항만(24개) - 어항 - 연안여객선터미널 - 국제여객선터미널, - 양식장 등 바다목장 - 수상호텔 등
해양 기계 경비	해양경비업 영역에 해당하지는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계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테러 등 위협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 임해산업시설(제철소, 조선소, 석유화학산업시설, 시멘트생산시설, 비료생산시설, 천연가스(LNG)산업기지 등)과 방위산업체 등) - LNG 탱커선, 원유선 등 위험물운반선이나 고부가 가치화물을 선적하고 정박 중인 화물선 - 운항 및 정박 중인 국제여객선과 연안여객선

6. 결론

국내외의 사경비제도의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미래의 팽창하는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경비를 보조하는 기능은 물론 높아진 수요자의 요구에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정착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경비 개념을 해양에 도입하여 우리나라 해상치안환경에 적합한 해양사경비제도 설계를 위하여 해양경비사제도를 제안하고 사경비영역과 업무를 분류하였다.

향후 해양에서 사경비 체계적인 수요조사와 국내실정에 맞는 해양경비업 모델 설계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참 고 문 헌]

- [1] 강길훈(2000), 경비지도사의 교육훈련체제에 대한 경비업자의 의식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0권.
- [2] 강영길(2007), 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제도의 정립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김형태(2008), 「항만시설 경비보안체제의 효율화 방안」, 월간해양수산 통권 제282호.
- [4] 김성언(2002), 한국의 민간경비: 성장과 합의, 한국형사

<표 1> 해양경비업 영역

경비영역	경비업무	적용예
해양 안전 경비	1. 선박, 해양구조물, 양식장,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협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해양체육관련 대회 등의 안전경비업무, 3. 선박이나 해양구조물 등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 해수욕장, - 해양레저시설 - 요트경기대회 - 요트 - 호화유람선, - 크루즈선, - 여객선
해양 수색 구조 경비	1. 조난선박이나 조난자에 대한 해상수색구조 업무 2. 해양오염감시업무 3. 적조예찰업무	- 실종자 수색구조 - 해양오염감시업무 - 적조예찰
해양 특수 경비	1. 해양관련 국가중요시설, 해양구조물 등 중요경비대상에 대하여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협발생을 방지	- 해안가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 - 고흥 나로우주센터 등 - 해안가에 위치한 국가 주

정책연구원.

- [5] 서상열(2008), 한국 민간경비의 인력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6] 이철현(2007), 경찰공공부문 이양이 자치경찰과 민간 경비의 직무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7] 정태황(2006), 국가중요시설의 기계경비시스템 적용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호.
- [8] 진성용 · 박성용 · 주종광 · 이은방(2007), 「해양경비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비지도사 제도에 관한 연구」, 추계해양환경안전학회발표회.
- [9] 한종욱(2003), 경찰경비론. 경찰대학.
- [10] 홍정선(2007), 경찰행정법, 박영사.
- [11] 진성용 · 박성용 · 주종광 · 이은방(2008), 항만해양경비지도사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추계해양환경안전학회발표회.